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9
----------	-----

제출년월일 2000. 8. 21.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범위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0.2.9. 대통령령 제16706호.) 및 동법시행규칙(2000.5.4. 건설교통부령 제234호)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시설등의 설치허용범위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가. 상수원보호구역(4.862km²)으로부터 사업예정부지까지의 이격거리를 종전에는 보호구역내에서만 제한하던 것을 법령개정으로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 지역까지 확대함. (안 별표제1호)
- 나. 도로법에 의한 국도·지방도·군도(시도)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을 제한하던 것을 법령개정으로 50미터이내 지역으로 확대함. (안 별표제2호)
- 다. 국가 및 지방 1·2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에 한해 제한하던것을 100미터이내 지역으로 확대함. (안 별표제6호)
- 라. 유효 저수량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별표제7호)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시설중 식품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이격거리”라 함은 대상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사업예정부지(부대시설을 포함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파주시관내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설치하는 식품 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식품집객업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단일 필지내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이 120제곱미터미만의 식품 집객업

2. 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농·축·수산물 직판장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변의 휴게소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4조(설치허용지역) ① 시장은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수질오염등 주위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숙박업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허용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지역외의 지역이라도 시장이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수립중인 지역내의 숙박업등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지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3인이내(시의원을 포함한다.)
2. 환경, 도시분야의 전문가 3인 이내
3. 관계공무원 3인 이내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 별표중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여부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에 의한 식품집객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
위원회설비빈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과 ☎ 940-4701
입안자	도시과장	우범찬
	도시계획담당	정원모
	담당자	이상완

【별 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지역

구 분	허 용 지 역
1.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4.862km ²)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된 지역
2. 도로주변지역	· 고속도로, 철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 이격된 지역 · 국도, 지방도, 군도(시도)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된 지역
3. 산림지역	· 산림법 제90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
4. 농지지역	· 농지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49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부훈령)제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이나 경지정리가 완비된 우량농지가 아닌지역
5. 문화재보호구역등 주변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 ·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 · 전통사찰보전법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
6. 하천주변지역	· 국가 및 지방1·2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상 이격된 지역
7. 저수지주변집수구역	· 유효저수량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 이격된 집수구역
8. 주민거주지역	· 환경오염이나 주변지역주민의 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
9. 주변여건판단지역	· 미풍양속 및 주변지역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